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10호

**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
일부개정고시**

2024. 2. 7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10호

「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·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, 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(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, 별표3)

- 1)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·출고 후 2일 이내(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,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2) 그러나,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

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

- 3)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(완화)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(단,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)

나.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(안 제2조제1의2호, 별표 6)

- 1)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·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
- 2)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,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·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
- 3) 따라서,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: 비 규제 확인(2023.12.19.)

(2) 행정예고(2024.1.4. ~ 2024.1.26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10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49조제2항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의4제5항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2항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「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」(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제2022-43호, 2022. 6. 1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

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의2호 중 “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”를 “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2일”을 각각 “5일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상품바코드별 재고정보”를 “재고정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마목, 같은 항 제2호 마목 중 “유전자재조합식품”을 각각 “유전자변형식품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정보의 점검 내용란 사목 중 “2일 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, “2일이내”를 “5일 이내”로 한다.

별표 6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6 제1호 가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(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를 “식품제조·가공업,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”로, 같은 호 나목6)과 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6) 재고기준일자

7) 재고량(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)

별표 6 제1호 가목1) 마), 다목5) 중 “유전자재조합식품”을 각각“유전자 변형식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·제3항 및 별표3,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고·출고된 품목부터 적용한다.

-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, 원산지(국가명),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

2. 수입식품등의 경우

가. ~ 라. (생략)

마.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

[별표 3]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·평가표(제5조 관련)

1.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·평가시 점검항목(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·평가도 동일한 기준 적용)

구분	점검 내용	점검 결과
정보연계	사. 이력정보가 2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(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입고내역은 2일 이내, 재고내역은 7일 간격)	

[별표 6]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연계에 관한 사항(제8조 관련)

1. 등록자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74조의4, 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의11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9조의2제6항 또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

-----, 유전자변형식품
--

2. 수입식품등의 경우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유전자변형식품--

[별표 3]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·평가표(제5조 관련)

1. (현행과 같음)

구분	점검 내용	점검 결과
정보연계	사. 이력정보가 5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(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입고내역은 5일 이내, 재고내역은 7일 간격)	

[별표 6]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연계에 관한 사항(제8조 관련)

1. -----

<p>하는 식품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의5제1항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식품(건강기능식품 제외)에 한함)</p> <p>1) ~ 5) (생략)</p> <p>6) 재고기준일자(<u>상품바코드 기준</u>)</p> <p>7) 재고량(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)(<u>상품바코드 기준</u>)</p> <p>다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(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.)</p> <p>1) ~ 4) (생략)</p> <p>5) <u>유전자재조합식품</u> 표시</p>	<p>하는 식품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의5제1항 및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식품(건강기능식품 제외)에 한함)</p> <p>1) ~ 5) (현행과 같음)</p> <p>6) 재고기준일자(<u>삭제</u>)</p> <p>7) 재고량(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)(<u>삭제</u>)</p> <p>다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(자사 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.)</p> <p>1) ~ 4) (현행과 같음)</p> <p>5) <u>유전자변형식품</u>--</p>
---	---